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전면개정 : 2023년 2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임용과 신입교원의 선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신입교원 임용

제3조(임용시기 및 방법)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 방법은 일반공개채용과 수시(특별)채용으로 한다.

제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외에 총장이 추천한 보직자들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한다.

제5조(충원인원 결정) ① 전체학과(또는 학부) 학생 수와 교수 비율, 소속 학과(또는 학부) 전체교수의 전공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충원한다. 또한 학과의 발전 가능성, 각종 주요지표 등을 고려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학과(또는 부), 기관에서 요청한 분야의 교수충원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학과(부), 기관의 의견진술이 있어야 한다.

1. 지원자가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동일전공 내 같은 대학 출신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경우
3. 서류와 진술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
4. 지나치게 전공을 세분화하여 응모대상자를 축소하고 연관된 분야의 우수인력들을 배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학과(학부, 기관)의 장기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6. 기존 전임교수들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제6조(공고 및 서류접수) 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 양식, 원적지 기재, 사진 첨부) 2통
2.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3. 경력증명서 및 신앙확인서 각 1통
4. 신원진술서(소정 양식, 사진 첨부) 6통
5. 가족관계증명서(사유란 기재) 3통

6.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각 1통
7. 연구실적조서(소정 양식, 증빙서류, 논문 및 실적물 첨부) 각 1통
8.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통
9. 산학협력계획서(산학협력중심교원에 한함) 1통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제7조(임용심사 절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 시범강의심사 등 3단계로 심사하며 신상조사를 병행한다.

제8조(기초 및 전공심사) ① 전공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심도있는 연구업적 심사를 위하여 총원대상이자 있는 각 학과(부), 전공별 전공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부)장, 동일전공 내 전공교수, 외부인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수는 3인 내지 6인으로 한다.
 2. 외부인사는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각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학부, 전공)에 지원한 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연구업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1. 학력 및 경력 심사
2. 연구실적물 심사 I (양적 심사)
3.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감안한 연구실적물 심사 II (우수성 심사)
- ④ 교무처장은 각 전공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가 심사기준 및 요령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심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면접심사)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전공심사 점수 중 학력 및 경력심사 점수와 전공심사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8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단,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산학협동업적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적극 노력하여 소속 학과(학부) 및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자
4.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5. 학부제 시행에 따른 동일학부 내 타전공과의 학문적 연관성이 깊은 전공분야를 공부한 자
6. 미래가 밝은 첨단정보와 기술에 관련된 전공분야를 공부한 자
7. 학계와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 ② 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면접심사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시범강의심사) ① 시범강의심사 대상자는 면접심사의 점수를 참고하여 고득점 순위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단, 기독교신자가 아닌 자 및 천안·아산 거주가 불가능한 자는 시범강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시범강의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시범강의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시범강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범강의심사 대상자가 지원한 학과(부), 전공 소속교수 및 학과(부)장

2. 인사위원회

④ 시범강의심사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단, 시범강의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과 전공교수 및 학과(부)장(학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심사점수 평균의 200%

2. 인사위원회 : 심사 참여위원당 100%

제11조(임용대상자 선정 및 선발) ① 신규임용 대상자는 면접심사(100점 만점) 점수의 70%, 시범강의 심사(100점 만점) 점수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하되 신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단,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업적의 논문을 출판한 경우는 면접점수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대상자는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용)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체검사에서 심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최종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외국인교원은 신체검사에 마약 및 성병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의하여 수시채용할 수 있다.

1. 연구업적이 질적으로 탁월한 경우.

2. 벤처정신이 투철하여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

3. 장차관 및 대학총장 출신에 상응하는 저명인사인 경우.

제12조(임용 확정) ① 인사위원회는 임용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여 신규임용 대상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이사회에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며, 임용이 결정된 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제 3 장 정년트랙 전임교원

제14조(임용자격) 임용자격은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교육, 연구, 산학, 봉사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단, 산학협력 중심교원은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자로서 벤처창업 및 국책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술(특허 포함) 또는 경력을 보유한 인사로 한다.

제15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준한다.

제16조(보수) ① 연봉계약은 교직원 보수규정, 연봉제 전임교원 임용등에 관한 시행규칙 및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체결한다.

② 연봉계약 체결 시에는 급여인상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연봉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책임수업시수) ①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중심평가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평가유형이 R형, S형인 교원: 9시간
2. 평가유형이 E형인 교원: 10시간
3. 평가유형이 I형인 교원: 6시간

②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수업반응도가 기준 미달이거나, 3년단위 평가 미통과 교원의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업적 및 성과약정) ① 재계약, 재임용 및 승진은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업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행한다.

② 업적평가 및 성과책정의 기준은 업적평가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따른다.

③ 산학협력중심교원의 경우 산학협력실적 달성도 평가를 재임용, 승진, 3년단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4 장 비정년 외국인회화교원

제19조(임용자격)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23조에 의거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자

제20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의 성실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초임용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③ 재계약 시에는 계약만료 2월 전에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계약은 별지서식의 외국인 교원 고용계약서에 의한다.

⑤ 외국인회화교원 중 교육성과가 탁월한 교원은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보수 및 재계약) ① 연봉계약은 교직원 보수규정, 연봉제 전임교원 임용등에 관한 시행규칙 및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체결한다.

② 재계약 시에는 급여인상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환율변동 등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④ 재계약을 위한 외국어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영역에 대해 평균 80점 미만 취득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개정 2024.11.01.)

제22조(책임수업시수) ① 외국인 회화교원의 매학기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1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수업반응도가 기준 미달일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비정년 교육중심교원

제23조(임용자격) 임용자격은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강의를 통해서 대학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4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준하며 최초임용 직급은 부교수 이하로 한다.

제25조(보수) ① 연봉계약은 교직원 보수규정, 연봉제 전임교원 임용등에 관한 시행규칙 및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체결한다.

② 연봉계약 체결 시에는 급여인상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연봉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책임수업시수) ①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수업반응도가 기준 미달일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업적 및 성과약정) ① 재계약, 재임용 및 승진은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업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행한다.

② 업적평가 및 성과책정 기준은 업적평가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6 장 비정년 산학협력중심교원

제28조(임용자격)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자로서 벤처창업 및 국책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술(특허 포함) 또는 경력을 보유한 인사
2.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자이며 대학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총장이 추천한 인사

제29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준하며 최초임용 직급은 경력에 따라 부교수 이하로 한다.

제30조(보수) ① 연봉계약은 교직원 보수규정, 연봉제 전임교원 임용등에 관한 시행규칙 및 연봉제 운영지침

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체결한다.

② 연구업적 및 관련분야의 공적이 탁월한 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봉 및 성과급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연봉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책임수업시수) ①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산학협력중심교원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수업반응도가 기준 미달일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업적 및 성과약정) ① 재계약, 재임용 및 승진은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행한다.

② 업적평가 및 성과책정 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7 장 비정년 봉사중심교원

제33조(임용자격) 임용자격은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봉사를 통해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4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준하며 최초임용 직급은 경력에 따라 부교수이하로 한다.

제35조(보수) ① 연봉계약은 교직원 보수규정, 연봉제 전임교원 임용등에 관한 시행규칙 및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체결한다.

② 연봉계약 체결 시에는 급여인상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연봉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책임수업시수) ①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수업반응도가 기준 미달일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업적 및 성과약정) ① 재계약, 재임용 및 승진은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업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행한다.

② 업적평가 및 성과책정 기준은 업적평가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8 장 비정년 연구중심교원

제38조(임용자격) 임용자격은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연구를 통해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9조(임용기간 및 임용방법)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에 준하며 최초임용 직급은 경력에 따라 부교수이하로 한다.

제40조(보수) ① 연봉계약은 교직원 보수규정, 연봉제 전임교원 임용등에 관한 시행규칙 및 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체결한다.

② 연봉계약 체결 시에는 급여인상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연봉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책임수업시수) ①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당 책임수업시수에 미달할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연구중심교원은 일정기간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해외체류교원)

⑤ 수업반응도가 기준 미달일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업적 및 성과약정) ① 재계약, 재임용 및 승진은 해당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행한다.

② 업적평가 및 성과책정 기준은 업적평가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9 장 승진심사

제43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승진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학사부총장과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본교 교원 중 부교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유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승진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⑧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때 위원의 정수는 제척위원 수를 감한 수로 한다.

⑩ 승진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하여 승진의 적격여부를 심의한다.

1. 본교 건학이념 구현 노력
2. 본교 발전 기여도 및 교내봉사 실적
3. 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의 능력과 실적
4. 연구, 산학협력 및 전문 영역 활동
5.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4조(교수 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교수승진 심사대상자는 [양식 1]과 [양식 5]를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 2차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1차심사에서는 별표 1에 제시된 교수승진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정량평가(50%)와 학과(부서) 대학발전참여실적평가(50%)를 실시하여, 2차 심사를 위한 대상자를 선발한다. 정량평가와 학과(부서) 대학발전참여실적평가는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정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취득점수를 평가기간으로 나눈 값에 실적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교원의 승진 심사를 위한 업적의 산출 기간은 전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기간이 최소 경과기간보다 짧은 경우 기준 점수를 월할 계산한다. 심사 기산일은 최초 부교수 임용자는 임용일부터, 승진 통과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직전 승진평가 통과 시 영역별 평가기간의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영역별 업적의 반영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4.08.31., 2026.03.01.)

2. 학과(부서) 대학발전참여실적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중 봉사업적 종합평가표에 기술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수승진심사 신청교원의 평가 점수는 평가기간 동안 평가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 2차심사에서는 1차심사의 평가점수(50%)와 공적조서평가점수(5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적조서평가는 교수승진심사 신청교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양식 5]를 토대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양식 6]에 준하여 평가한다. 상벌(포상, 인사조치), 계열내 상대 순위 등을 감점 또는 가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5조(부교수 승진심사절차 및 방법) ① 부교수승진 심사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양식 2]와 [양식 5]를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 2차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1차심사에서는 별표 1에 제시된 부교수승진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2차 심사를 위한 대상자를 선발한다. 정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취득점수를 평가기간으로 나눈 값에 실적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승진 심사를 위한 업적의 산출 기간은 전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기간이 최소 경과기간보다 짧은 경우 기준 점수를 월할 계산한다. 심사 기산일은 최초 조교수 임용일부터 적용하며, 영역별 업적의 반영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4.08.31.)

④ 2차심사에서는 1차심사의 평가점수(50%)와 공적조서평가점수(5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적

조서평가는 부교수승진심사 신청교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양식 5]를 토대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양식 6]에 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가 70점을 초과한 교원을 승진 적격자로 선발한다.

제46조(조기승진 심사절차 및 방법) ① 조기승진 심사대상자는 [양식 3]과 [양식 5]를 작성하여 승진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 조기승진 심사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라, 부교수 조기승진 심사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45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진행한다.

제47조(승진심사결과 통보)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승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교원은 심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진행하여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심사결과 확정 및 임용) ① 승진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여 승진 적격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이사회에 승진 적격자에 대한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승진 적격자에 대한 승진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며, 승진임용이 결정된 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한다.

제50조(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장 정년보장심사

제51조(정년보장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학사부총장과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본교 교원 중 부교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유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⑧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때 위원의 정수는 제척위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

⑩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하여 승진의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1. 본교 건학이념 구현 노력
2. 본교 발전 기여도 및 교내봉사 실적
3. 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의 능력과 실적
4. 연구, 산학협력 및 전문 영역 활동
5.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2조(정년보장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정년보장심사대상자는 [양식 4]와 [양식 5]를 작성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 2차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1차심사에서는 별표 1에 제시된 교수승진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정량평가(50%)와 학과(부서) 대학발전참여실적평가(50%)를 실시하여, 2차 심사를 위한 대상자를 선발한다. 정량평가와 학과(부서) 대학발전참여실적평가는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정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취득점수를 평가기간으로 나눈 값에 실적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정년보장심사를 위한 업적의 산출 기간은 전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기간이 최소 경과기간보다 짧은 경우 기준 점수를 월할 계산한다. 심사 기산일은 최초 교수 및 부교수 임용자는 임용일부터, 부교수 승진 통과 이력이 있는 경우는 부교수 승진평가 통과 시 영역별 평가기간의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영역별 업적의 반영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4.08.31.)
2. 학과(부서) 대학발전참여실적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중 봉사업적 종합평가표에 기술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정년보장심사 신청교원의 평가 점수는 평가기간 동안 평가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 2차심사에서는 1차심사의 평가점수(50%)와 공적조서평가점수(5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적조서평가는 정년보장심사 신청교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양식 5]를 토대로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양식 6]에 준하여 평가한다. 상벌(포상, 인사조치), 계열내 상대 순위 등을 감점 또는 가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3조(정년보장심사결과 통보)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심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년보장심사 대상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정년보장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교원은 심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진행하여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결과 확정 및 임용) ①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정년보장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여 정년보장임용 적격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이사회에 정년보장임용 적격자에 대한 정년보장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년보장임용 적격자에 대한 정년보장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며, 정년보장임용이 결

정된 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한다.

제56조(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 칙

제57조(복무) 단과대학 또는 학과(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교무처장이 지정한 단과대학교수회의 또는 학과(학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58조(시행지침)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연구년 중인 교원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업적점수는 전학년도 해당학기의 업적점수로 대체한다. 단,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연구년 중인 교원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점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연구년 중인 교원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업적점수는 전학년도 해당학기의 업적점수로 대체한다. 단,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연구년 중인 교원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점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연구년 기간	교육영역 업적점수	봉사영역 업적점수
2024년 09월 01일 ~ 2025년 08월 31일	전년도 해당학기 교육영역 업적점수에 당해연도 해당학기 대학발전기여의 교육단위 성과지표(입학충원율, 재학률, 취업률)의 취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적용함	전년도 해당학기 봉사영역 업적점수에서 교육성과지표의 3대 핵심교육성과지표(입학충원율, 재학률, 취업률)점수를 제외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08.31., 2025.09.01.)

중심평가유형별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 최저기준

1) 정년트랙 교원

평가 내용	중심평가 유형	최소경과 기간(년)	연간 기준점수 (연평균)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최초 재임용	E형/R형/S형	3	240점	40점	1) 650점 2) 수업반응도 평가 최대 점수(300점)의 75% 이상	200점
	I형		40점	240점		
조교수 재임용	E형/R형/S형	3	160점	40점		
	I형		40점	160점		
부교수 재임용*	E형/R형/S형	6	160점	40점		
	I형		40점	160점		
교수 재임용	E형	6	100점	30점	700점	수업반응도 평가 최대점수(300점)의 75% 이상 200점
	R형		140점	30점	600점	
	S형		100점	30점	650점	
	I형		30점	120점	650점	
부교수 승진	E형/R형/S형	6	160점	40점	1) 650점 2) 수업반응도 평가 최대 점수(300점)의 75% 이상	200점
	I형		40점	160점		
교수 승진	E형/R형/S형	6 [5]**	200점	50점		
	I형		50점	200점		
정년보장	E형/R형/S형	-	200점	50점		
	I형		50점	200점		
정년보장후 3년단위평가	E형	3	100점	30점	700점	수업반응도 평가 최대점수(300점)의 75% 이상 200점
	R형		140점	30점	600점	
	S형		100점	30점	650점	
	I형		30점	120점	650점	

* 부교수로서 교수승진 최소기준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승진을 하지 못한 만 58세 이상의 교원의 경우, 부교수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년보장후 3년단위평가의 기준으로 대체한다.

** 2011년 2월28일 이전 임용 교원에 해당함

2) 비정년트랙 교원

평가내용	중심평가 유형	연간 기준점수 (연평균)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재임용	E형	80점	20점	535점	100점
	R형	160점	20점	455점	100점
	S형	80점	20점	455점	180점
	I형	20점	160점	455점	100점
부교수 승진	E형	160점	40점	1) 650점 2) 수업반응도 평가 최대점수(300점)의 75% 이상	200점
	R형	160점	40점		
	S형	160점	40점		
	I형	40점	160점		

1. 승진 심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하여 기준점수가 증가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한 기간

나. 징계처분 기간 및 교원인사 규정 제54조의 승진제한 기간

다. 공무에 의한 출장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라. 출산에 의한 휴가 기간

3. 연구년 중인 교원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업적점수는 전학년도 해당 학기의 업적점수로 대체한다.

4. 교원의 재임용 심사, 승진 심사 및 3년단위 평가시 영역별 기준 점수 미달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미달된 기준 점수를 타 영역의 기준 점수 초과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영역 간 점수의 대체는 기준 점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만 대체가 가능하며, 비코어가 코어로 대체될 수는 없다.

가. 교원의 재임용 심사 평가에 한하여, 봉사업적점수의 초과 점수는 모든 중심평가영역의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영역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주저자 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25.09.01.)

나. 연구영역점수와 산학협력영역의 연구활동 점수는 상호대체가 가능하다.

다. 산학협력영역의 교육활동 점수는 교육영역의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다.

라. 산학협력영역의 봉사활동 점수는 봉사영역의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다.

5. 국제저명학술지 공동저자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학술논문 공동저자 점수 환산을 규정에 따라 공동저자 점수를 부여한다.

6.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순수학술지 게재 논문비율 미달 시 부족분에 한하여 산학협력영역 중 기술이전, 특허등록 및 외부연구비 수주 점수를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순수학술지 게재 논문 주저자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7. 재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가. E/R/S형 평가를 받는 교원: 평가대상 기간의 연구업적 중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순수학술지 게재 논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I형 평가를 받는 교원: 산학협력업적 중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8. 신규 임용된 교원의 최초 재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가. E/R/S형 평가를 받는 교원: 평가대상 기간의 연구업적 중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순수학술지 게재 논문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나. I형 평가를 받는 교원: 산학협력업적 중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9. 승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가. E/R/S형 평가를 받는 교원: 평가대상 기간의 연구업적 중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순수학술지 게재 논문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나. I형 평가를 받는 교원: 산학협력업적 중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점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10. 정년보장후 3년단위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가. E/R/S형 평가를 받는 교원: 평가대상 기간의 연구업적 중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순수학술지 게재 논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내공식행사인 전체교수연수, 전체교수회의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나. I형 평가를 받는 교원: 산학협력업적 중 코어업적의 점수가 기준 점수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교내공식행사인 전체교수연수, 전체교수회의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3.08.31., 2025.09.01., 2026.03.01.)

중심평가유형별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및 연봉평가등급
정량평가 산출기준

1) 교원의 중심평가유형별 업적평가 반영 비율

중심평가유형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	연구영역
E(education)형	70%		30%	
R(research)형	30%	70%		

중심평가유형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봉사영역
I(industrial cooperation)형	30%		70%	
S(service)형	30%			70%

2) 교원의 중심평가유형에 따른 영역별 최대인정점수

중심평가유형	연봉평가등급산출, 승진/정년보장심사시 연간 최대인정점수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봉사영역
E형	한도 없음	300점		한도 없음
R형	750점	한도 없음*		
I형	750점	50점	한도 없음	
S형	750점	200점		

* SCOPUS학술지, 국외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학술지 점수는 평가기간 내 학기당 평균 250점까지만 인정(2년 기준 1000점, 6년 기준 3000점)

[양식 1]

교수승진 심사신청서

▣ 인적 사항

소	속	대학	학과(부)	전공
직	급			
현 직급 임용일				
성	명			

※ 「교원인사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향후 평가 등을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교수승진 심사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속 부서장 : (인)

[소속 부서장 : 원장, 학장, 단장, 처(실, 소)장]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2]

부교수승진 심사신청서

■ 인적 사항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직급			
현 직급 임용일			
성명			

※ 「교원인사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향후 평가 등을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부교수승진 심사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속 부서장 : (인)

[소속 부서장 : 원장, 학장, 단장, 처(실, 소)장]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조기승진 심사신청서

■ 인적 사항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직급			
현 직급 임용일			
성명			

※ 「교원인사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향후 평가 등을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조기승진 심사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속 부서장 : (인)

[소속 부서장 : 원장, 학장, 단장, 처(실, 소)장]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신청서

■ 인적 사항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직급			
현 직급 임용일			
성명			

※ 「교원인사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향후 평가 등을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속 부서장 : (인)
[소속 부서장 : 원장, 학장, 단장, 처(실, 소)장]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6]

승진 및 정년보장교원임용 2차심사 평가표

피평정자	소속 :			
	직급 :			
	성명 :			
평 가 항 목		항목별 점수	평가점수	비 고
1.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노력과 기여	기독교정신 구현 노력과 기여	10		
	벤처정신 구현 노력과 기여	10		
2. 학교발전 기여도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기여실적	10		
	대내외 활동을 통한 학교위상 제고 실적	10		
3. 교육 및 학생지도	강의의 열정 및 능력	10		
	학생과의 관계 및 지도실적	10		
4.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연구의 전문성 및 능력	10		
	연구비 수주실적	10		
5. 근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근무의 성실성	10		
	근무의 적극성 및 열정	10		
합 계		100		

심사위원 :

(인)

[양식 7]

교원 재임용 신청서

소속	대학	학과(부)
직급		
성명		

※ 「교원인사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향후 평가 등을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20 학년도 제 학기 교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호서대학교 총장 귀하